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 선고 2018가단6885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(개명전 : E)

3. F

변론 종결 2019. 4. 25

판결 선고 2019. 5. 2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2. 2.부터 2009. 5.7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2015 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는 주식회사 G와 업무협약 및 제품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계약증거금 반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,피보험자 주식회사 G, 보험가입금액 6,000만원,보험기간 2007. 2.21.부터 2008. 2. 20.까지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D과 F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.

나. 피고 회사의 보험사고로 원고는 2008. 2. 1. 주식회사 G에게 6,000만원을 보험 금으로 지급함.

다.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96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2009. 5. 28. 승소판결을 받았고,위 판결은 확정됨.

라.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광섭